

#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현황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Operating Status of the Public Library Steering Committee

심 효 정 (Hyojung Sim)\*

노 영 희 (Younghee Noh)\*\*

### 초 록

본 연구는 「도서관법」 제 30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현황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향후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향 및 정책방향을 모색했다. 분석 결과, 운영횟수는 1년에 1~2번, 운영위원회 회의 결정사항을 상부에 보고하기는 하나 규정 등에 회의록 보고 및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담당 인원 부족 등으로 인해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 활성화를 위한 주요 요소는 위원구성, 위원회의 책임과 권한, 전담직원 배치 등으로 조사되었다. 표준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으나 자율성 저해에 대한 우려도 함께 언급되고 있어 자율성을 충분히 보장한 표준 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정기적 회의 개최, 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나 규정 보완, 분과위원회 설치, 전담직원 배치 등도 고려해 다각적인 활용과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ABSTRACT

In this study, the current status of the public library steering committee, which is opera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30 Paragraphs 2 and 3 of the Libraries Act, was examined and understood through a survey, and the direction of the promotion and policy for revitalizing the steering committee was sought moving forwar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performed, the number of operations is once or twice a year, and the decisions of the steering committee meetings are reported to their supervisors, yet the reporting and disclosure of the meeting minutes are not mandatory in terms of regulations, etc., and while the importance was recognized, it turned out that the operation was carried out formally due to the lack of personnel in charge. The primary factors for revitalizing the operation were investigated as the structure of the committee, the responsibilities and authority of the committee, and the assignment of dedicated staff, etc. While there was a high perception that the enactment of a standard ordinance (proposal) was necessary, the concerns about the inhibition of autonomy were also mentioned, and hence, it is necessary to enact a standard ordinance(proposal) that sufficiently guarantees autonomy. To revitalize the steering committee, it is necessary to find various utilization and operational plans by considering holding regular meetings, supplementing systems and regulations that can reflect meeting decisions, establishing subcommittees, and assigning dedicated staff.

키워드: 공공도서관, 도서관운영위원회, 도서관정책, 주민참여, 현황조사

Public Library, Library Steering Committee, Library Policy, Resident Participation, Survey

\*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shjcap75@hanmail.net) (제1저자)

\*\* 건국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irs4u@kku.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 2022년 8월 12일 논문심사일자 : 2022년 8월 12일 게재확정일자 : 2022년 9월 3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3(3): 77-101, 2022.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2.33.3.077>

© Copyright © 2022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 1. 서론

『도서관법』에 의하면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도서관은 오랫동안 지역이라는 지리적, 역사적, 사회적 공간 안에서 지역주민을 위해 각종 지식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계층별 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의 문화향유 서비스 중심기관으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더해 앞으로는 지역주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의 문화적, 사회적 발전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책임성도 강조되고 있다.

공공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도서관 건립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공공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는 다양한 사회경제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도서관 정책 수립에 관여하고, 여러 의견이 다양한 형태로 취합되는 과정들이 있지만, 공공도서관의 주요 서비스 대상인 지역민들의 요구사항을 잘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좋은 서비스는 결국 지역주민들의 질문이나 요구에 도움이 되고 잘 활용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이 도서관 운영에 직

접적으로 참여하고 공동 운영하는 방식의 민관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는 도서관의 운영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장으로 법률에 보장된 제도이다.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적극 활용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은 도서관의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지역사회 주민은 공공도서관의 봉사대상일 뿐 아니라 공공도서관을 존재하게 하는 권력의 원천이다(서혜란, 1996). 이런 측면에서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는 민과 관이 함께 도서관 운영에 대한 발전적인 의견을 나누고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운영위원회 구성원에는 공무원, 정치인, 전문가 등도 참여하지만 지역주민, 지역 인사 등도 참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대표해서 듣는 좋은 소통 창구가 될 수 있다. 지방분권과 자치가 강화되는 현 추세에서 도서관에 관심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제도나 정책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지역주민이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다면 도서관 운영에도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도서관 발전에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회 운영현황을 점검해보고 문제점과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운영위원회 참여경험, 운영횟수, 구성, 위촉직 위원의 위원 선임 기준, 심의내용, 회의록 작성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운영위원회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현황조사 연구는 본 연구자의 최근 연구인 도서관운영위원회 문헌분석 연구에 대한 후속연구로 운영위원회 운영 방향 및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방안을 정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 2.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와 관련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혜란(1996)은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제도 성립의 배경과 실태조사 등을 통해 주민참여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도서관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난 점과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도서관 운영 전반에 걸친 기본정책 문제를 다루는 것임을 설명하면서 도서관운영위원회가 도서관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음을 언급했다. 또한 홍보기능이 운영위원회의 가장 유용한 특징임을 밝혔다.

오동근(2008)은 미국 LA 지역 공공도서관들을 중심으로 '도서관의 친구들', 자원봉사자, 도서관재단의 활동사례를 분석하였다. 지역주민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공공도서관의 경우 외부 인적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임을 언급하면서 지속성을 갖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기존 조직들에 대한 벤치마킹과 우리나라의 환경, 사회적, 법률적 조건에 맞추어 설립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정종기(2008)는 자치행정기관의 다양한 시민참여제도를 공공도서관의 효율적 경영을 위한 주민참여프로그램으로 응용하기 위해 공공도서관 주민참여프로그램들의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를 통해 향후 공공도서관이 고객중심적, 주민 참여적인 도서관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주민참여프로그램을 모색하여야 하며 주민참여기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활성화 전략으로 지역주민의 도서관 접근성 확대, 도서관의 자율성 확보, 주민참여 업무의 결정, 주민참여방법의 개발, 대표성을 확보한 주민대표 확보, 주민참여에 관한 전담사서의 양성 및 배치, 관련 시민단체와의 네트워크 형성 등을 제안하였다.

김중성(2013)은 대구지역 공공도서관의 현 상황을 고찰하고 발전을 위한 과제를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대구지역 공공도서관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효율과 규모 충족성 높은 도서관 건립 지향, 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확립,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특히 운영위원회가 실제적인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회의 정례화, 개최 횟수 증가, 권한 확대가 필요함을 언급했다.

오주환(2014)은 공공도서관 거버넌스가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개념으로 보면서 공공도서관 거버넌스의 활동과 구성요소에 대해 살펴보고 도서관경영 참여자들의 인식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공공도서관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법적인 근거 제정, 참여 주체와 방법 정립, 참여자들의 권한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심효정, 노영희(2022)는 충청지역 공공도서관

관 조례에 포함된 도서관운영위원회 조항 분석에 관한 연구에서 운영위원회 관련 조례 내용을 분석하여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운영위원회 관련 조례제정 현황,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 포함 여부, 구성 내용, 구성방식, 기능, 회의와 규정제정 및 수당 지급 등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이 분석을 토대로 조례 담당 부서, 도서관운영위원회 의무 설치, 위원구성에 있어 도서관장, 도서관 전문가의 참여 보장, 정기회의 개최, 회의록 공개, 위원회 심의 결과 반영 등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관련 연구는 외부 인적자원 활용, 주민참여, 거버넌스 관점에서의 이론연구와 실태조사 및 인터뷰 등을 활용한 연구가 일부 진행되긴 하였으나 공공도서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의 연구가 없고 운영현황에 관한 상세한 조사 및 최신 연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관련한 선행연구가 활발한 편은 아니어서 향후 지역별 운영위원회에 관한 다양한 분석과 연구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전국 공공도서관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운영위원회 현황 파악과 함께 향후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설문은 KSDC DB<sup>1)</sup>를 통해 진행했으며, 설

문 결과의 심층적 분석을 위해 도서관 근무경력, 근무했던 도서관 수, 직급에 따른 운영위원회 참여경험의 차이를 분석하고, 운영위원회 중요성과 운영의 어려움 정도에 대해 조례 내 관련 조항 포함 여부, 참여경험, 설치·운영 기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 3.1 설문대상 선정 및 진행 절차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현황과 운영방안에 관해 전국 공공도서관에 근무하는 도서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은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2021년 기준으로 등록된 공공도서관 1,221개관 중 10번째 순서마다 표본을 추출하고 그 방식을 반복해서 약 50%인 610개관을 선정하였다. 설문조사는 7월 12일부터 7월 21일까지 10일간 온라인으로 수행하였으며, 설문대상으로 선정된 도서관에 전화 연락을 해 설문 참여 의사를 밝힌 도서관 운영위원회 담당자를 포함한 도서관 직원의 이메일 주소를 확보한 후 이메일로 설문 링크(URL)를 발송하고 온라인 설문 참여하도록 요청하였다. 모두 302건을 배포하였고 총 154건이 회수되어 약 50.99%의 회수율을 보였다(〈표 1〉 참조).

#### 3.2 설문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설문 문항 개발을 위해 오주환(2014), 심효정, 노영희(2022) 등 공공도서

1) <http://ksdcdb.kr>, KSDC DB는 사회과학 조사·통계자료 아카이브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설문지 작성과 빈도 분석 등의 설문결과 통계분석에 활용

〈표 1〉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현황 조사

구분	내용
일시	2022년 7월 12일 ~ 2022년 7월 21일
진행 방법	e-mail을 통한 온라인 설문 배포
대상자	공공도서관 직원 총 302명
설문회신 건수	154명

〈표 2〉 설문구조도

구분	문항	문항 수
인구통계학적 특징	성별, 연령, 재직도서관의 소재지, 재직도서관의 소속, 정규직 직원 수, 도서관 근무경력, 근무했던 도서관 수, 직급, 소지한 사서 자격	9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현황에 관한 의견	도서관 관련 조례에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이 포함되는지	20
	운영위원회 업무 참여(담당 또는 지원) 경험 횟수	
	운영위원회 업무 미참여 이유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기간	
	운영위원회 1년 운영횟수(최근 3년 평균)	
	운영위원회 미개최 이유	
	운영위원회 구성 인원	
	운영위원회 위원 현황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이 60% 이상인지	
	위촉직 위원 선임 기준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	
	연임 횟수 제한 여부	
	운영위원회 심의내용	
	운영위원회 결정사항 상부 보고 여부	
회의 결정사항을 보고하지 않는 이유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반영 여부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반영 정도		
운영위원회 회의결과를 반영하지 않는 이유		
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 여부		
회의록 미공개 이유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방안에 관한 의견	민관협치 운영 측면에서의 운영위원회 중요도	8
	운영위원회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	
	운영위원회 운영의 어려움 정도	
	운영위원회 운영 시 수반되는 어려움	
	운영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내용	
	운영위원회 관련 표준 조례(안) 필요 여부	
운영위원회 관련 표준 조례(안)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		
기타의견	1	
계	38	

관 운영위원회 관련 자료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설문 문항은 크게 1) 인구통계학적 특징, 2)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현황에 관한 의견,

3)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방안에 관한 의견, 4) 기타의견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각 영역별 세부내용 및 문항 수는 〈표 2〉와 같다.

## 4. 연구 결과

### 4.1 인구통계학적 특징

본 설문조사에는 공공도서관 직원 154명이 참여하였으며, 분석에 앞서 공공도서관 직원의 일반사항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3〉 참조).

성별은 남성 15.58%, 여성 77.02%로 여성이 더 높은 비율로 설문에 참여하였으며, 연령은 30대 43.51%, 40대 27.92%, 50대 21.43%, 20대 7.14% 순으로 30대가 가장 많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재직하고 있는 도서관의 소속은 지방자치단체 85.71%, 교육청 14.29% 순으로 나타났으며, 도서관이 위치한 지역은 인천·경기·강원권(36.36%)과 서울권(27.27%)이 많이 참여하였다. 재직하고 있는 도서관의 정규직 직원 수는 3~5명이 29.87%, 6~10명 29.22%, 11~15명 17.53%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근무경력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이 30.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현재까지 근무했던 도서관 수는 3개관 이상 5개관 미만이 38.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설문 참여자의 직급은 직원(사서)이 74.0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소지한 사서 자격의 경우 2급정사서 자격을 소지한 응답자가 73.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4.2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현황에 관한 의견

공공도서관 직원들의 운영위원회 운영현황에 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도서관 관련 조례에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 포함 여부, 운영위

원회 업무 참여 여부, 업무 미참여 이유, 설치·운영 기간, 1년 운영횟수, 미개최 이유, 구성 인원, 위원 현황,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이 60% 이상인지, 선임 기준,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 4.2.1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 포함 여부

도서관 조례에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포함되어 있다는 의견이 96.75%,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의견이 3.25%로 나타나, 대체로 도서관 조례에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법」은 공공도서관은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하고 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에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므로 즉시 조례에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을 포함하는 개정이 필요하다(〈표 4〉 참조).

#### 4.2.2 운영위원회 업무 참여에 관한 사항

##### 1) 업무 참여경험 횟수

운영위원회 업무 참여(담당 또는 지원) 경험 횟수에 대해 분석한 결과, 사업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은 도서관 관계자가 44.16%로 가장 많았으며, 1~2회 참여자 25.97%, 11회 이상 11.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운영위원회 업무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거나 1~2회 참여해본 관계자가 전체 설문 참여자의 70.13%로 대다수 설문 참여자가 운영위원회 업무에 참여해보지 못했거나 참여한 경험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표 3〉 인구통계학적 결과

구분	문항	N	%
성별	남성	24	15.58
	여성	130	77.02
연령	20대	11	7.14
	30대	67	43.51
	40대	43	27.92
	50대	33	21.43
재직하고 있는 도서관의 소속	지방자치단체	132	85.71
	교육청	22	14.29
재직하고 있는 도서관이 위치한 지역	서울권	42	27.27
	부산·울산·경남권	15	9.74
	대구·경북권	6	3.90
	인천·경기·강원권	56	36.36
	광주·전북·전남·제주권	15	9.74
	대전·세종·충북·충남권	20	12.99
재직하고 있는 도서관의 정규직 직원 수	1명~2명	13	8.44
	3명~5명	46	29.87
	6명~10명	45	29.22
	11명~15명	27	17.53
	16명~20명	2	1.30
	21명이상	21	13.64
도서관에서 근무경력(현재 직장과 이전 직장 근무 기간을 합산한 기간)	1년미만	6	3.90
	1년이상~3년미만	12	7.79
	3년이상~5년미만	11	7.14
	5년이상~10년미만	47	30.52
	10년이상~15년미만	30	19.48
	15년이상~20년미만	20	12.99
현재까지 근무했던 도서관 수	20년이상	28	18.18
	1개관	18	11.69
	2개관~3개관미만	44	28.57
	3개관~5개관미만	59	38.31
	5개관이상	33	21.43
직급	직원(사서)	114	74.03
	부서장(부장, 과장, 팀장 등)	16	10.39
	관장	20	12.99
	기타	4	2.60
소지한 사서 자격	1급정사서	17	11.04
	2급정사서	113	73.38
	준사서	17	11.04
	없음	6	3.90
	기타	1	0.65
계		154	100.0

〈표 4〉 도서관 조례 내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 포함 여부

문항	N	%
포함	149	96.75
미포함	5	3.25
계	154	100.00

〈표 5〉 운영위원회 업무 참여(담당 또는 지원) 경험 횟수

문항	N	%
0회	68	44.16
1회~2회	40	25.97
3회~5회	16	10.39
6회~10회	11	7.14
11회 이상	18	11.69
기타	1	0.65
계	154	100.00

이와 함께 도서관 근무경력, 근무했던 도서관 수, 직급에 따른 운영위원회 참여경험 차이를 분석하였다.

먼저, 도서관 근무경력에 따른 운영위원회 참여경험 차이로, 1회 이상 운영위원회에 참여해 본 경험이 있는 직원의 근무경력을 분석한 결과, 경력 20년 이상 직원이 89.3%로 가장 높으며, 15년 이상~20년 미만의 직원 70%, 10년 이상~15년 미만의 직원 63.3%, 5년 이상~10

년 미만의 직원 44.7%로 근무경력이 높을수록 참여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년 미만의 근무경력을 가진 직원은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참여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근무했던 도서관 수에 따른 운영위원회 참여 경험 차이를 분석한 결과, 5개관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직원의 75.8%가 운영위원회에 1회 이상 참여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 6〉 도서관 근무경력에 따른 운영위원회 참여경험

구분	0회		1회-2회		3회-5회		6회-10회		11회 이상		기타		F	P
	N	%	N	%	N	%	N	%	N	%	N	%		
1년 미만	6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1,566	0.161
1년 이상~3년 미만	8	66.7	3	25.0	1	8.3	0	0.0	0	0.0	0	0.0		
3년 이상~5년 미만	8	72.7	2	18.2	1	9.1	0	0.0	0	0.0	0	0.0		
5년 이상~10년 미만	26	55.3	11	23.4	5	10.6	3	6.4	2	4.3	0	0.0		
10년 이상~15년 미만	11	36.7	10	33.3	3	10.0	4	13.3	2	6.7	0	0.0		
15년 이상~20년 미만	6	30.0	8	40.0	2	10.0	0	0.0	3	15.0	1	5.0		
20년 이상	3	10.7	6	21.4	4	14.3	4	14.3	11	39.3	0	0.0		



0회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3개관~5개관 미만 52.6%, 2개관~3개관 미만 5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1개관의 경우, 61.1%가 운영위원회 참여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근무했던 도서관 수가 많을수록 참여경험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표 7〉 참조).

직급에 따른 운영위원회 참여경험 차이를 분석한 결과, 먼저 관장의 경우 기타를 제외하고 모두 참여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1회 이상이 55%로 6회~10회가 15% 등 타 직급에 비해 참여경험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직원(사서)의 경우 과반수 이상(54.4%)이 참여해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직급이 높을수록 운영위원회에 참여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2) 운영위원회 업무 미참여 사유

운영위원회 업무 미참여 이유에 대해 분석한

결과, 담당 또는 참여 대상이 아니어서가 88.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타와 잘 몰라서 5.88%, 업무가 많아 참여하기 어려워서 4.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자의 경우 운영위원회가 없거나 형식적으로 이용자간담회 방식으로만 운영되어 참여하지 못했다고 응답하였다.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업무에 참여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살펴보았을 때, 담당 또는 참여 대상이 아니어서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본 설문조사의 주 응답자가 직원(사서)인 것과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앞서 직급에 따른 운영위원회 참여경험 분석에서도 직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여해본 적이 없다는 점, 부서장과 관장의 참여경험이 높은 것으로 보았을 때, 현재 공공도서관의 운영위원회는 상대적으로 직원(사서)의 참여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표 9〉 참조).

〈표 7〉 근무했던 도서관 수에 따른 운영위원회 참여경험

구분	0회		1회-2회		3회-5회		6회-10회		11회 이상		기타		F	P
	N	%	N	%	N	%	N	%	N	%	N	%		
1개관	11	61.1	2	11.1	2	11.1	0	0.0	2	11.1	1	5.6	3.490	0.017
2개관~3개관 미만	21	47.7	11	25.0	5	11.4	4	9.1	3	6.8	0	0.0		
3개관~5개관 미만	28	47.5	17	28.8	4	6.8	4	6.8	6	10.2	0	0.0		
5개관 이상	8	24.2	10	30.3	5	15.2	3	9.1	7	21.2	0	0.0		

〈표 8〉 직급에 따른 운영위원회 참여경험

구분	0회		1회-2회		3회-5회		6회-10회		11회 이상		기타		F	P
	N	%	N	%	N	%	N	%	N	%	N	%		
직원	62	54.4	30	26.3	11	9.7	7	6.1	4	3.5	0	0.0	1.338	0.264
부서장	2	12.5	7	43.8	3	18.8	1	6.3	3	18.8	0	0.0		
관장	0	0.0	3	15.0	2	10.0	3	15.0	11	55.0	1	5.0		
기타	4	100.0	0	0.0	0	0.0	0	0.0	0	0.0	0	0.0		

〈표 9〉 운영위원회 업무 미참여 이유(복수문항)

문항	N	%
담당 또는 참여 대상이 아니어서	60	88.24
업무가 많아 참여하기 어려워서	3	4.41
관심이 없어서	2	2.94
잘 몰라서	4	5.88
기타	4	5.88

4.2.3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이상의 기간 동안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0〉 참조).

1)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기간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기간에 대해 분석한 결과,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22.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년 이상 20.78%, 5년 이상 10년 미만 14.9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현재 10년 이상 운영위원회를 운영한 도서관이 56.5%로, 절반 이상의 도서관이 10년

2) 운영위원회 1년 운영횟수(최근 3년 평균)  
최근 3년간 1년 내 운영위원회 운영횟수를 분석한 결과, 1~2회가 75.54%로 가장 많았으며, 3~5회 17.99% 등으로, 1년에 1~2회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참조).

〈표 10〉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기간

문항	N	%
미설치(미운영)	15	9.74
1년 미만	5	3.25
1년 이상~3년 미만	9	5.84
3년 이상~5년 미만	15	9.74
5년 이상~10년 미만	23	14.94
10년 이상~15년 미만	35	22.73
15년 이상~20년 미만	20	12.99
20년 이상	32	20.78
계	154	100.00

〈표 11〉 운영위원회는 1년 운영횟수(최근 3년 평균)

문항	N	%
0회	4	2.88
1회~2회	105	75.54
3회~5회	25	17.99
5회 이상	3	2.16
기타	2	1.44
계	139	100.00

3) 운영위원회 미개최 이유

운영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미개최 이유에 대해 분석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해 개최하지 않은 경우가 100%, 다들 안건이 없어서가 25%로 나타나 운영위원회 운영을 다소 소극적으로 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2〉 참조).

4.2.4 운영위원회 위원구성에 관한 사항

1) 운영위원회 구성 인원 수

운영위원회의 구성 인원 수에 대해 분석한 결과, 5명 이상~10명 미만인 54.68%, 10명 이상~15명 미만 37.41% 등의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5명~15명의 인원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어 적절한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표 13〉 참조).

2) 운영위원회 위원의 유형

운영위원회의 위원 유형에 대해 분석한 결과, 주민대표, 이용자, 시민단체가 21.1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관장 18.40%, 교육·문화 관계전문가 16.87%, 도서관 전문가 14.14%, 시·군·구 업무유관부서 공무원 10.56% 등의 순으로 위원들이 구성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기타 응답에서는 지역 작가, 지역 내 유관기관 담당자, 기초의원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표 14〉 참조).

3)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비에 관한 현황

운영위원회의 위원구성에서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이 60%를 넘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넘지 않는다 36.69%, 넘는다 33.81%, 잘 모르겠다 19.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표 12〉 운영위원회 미개최 이유(복수응답)

문항	N	%
코로나19로 인해	4	100.00
다들 안건이 없어서	1	25.00
굳이 개최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서	0	0.00
여유가 없어서	0	0.00
기타	0	0.00

〈표 13〉 운영위원회 구성 인원 수

문항	N	%
5명 미만	2	1.44
5명 이상~10명 미만	76	54.68
10명 이상~15명 미만	52	37.41
16명 이상~20명 미만	6	4.32
20명 이상	3	2.16
계	139	100.00

〈표 14〉 운영위원회 위원의 유형 현황(복수응답)

문항	N	%
도서관전문가	83	14.14
교육·문화관계전문가	99	16.87
주민대표, 이용자, 시민단체	124	21.12
시·군·구의원	55	9.37
관장	108	18.40
도서관 관리부서의 장	49	8.35
시·군·구 업무유관부서 공무원	62	10.56
기타	7	1.19

〈표 15〉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비에 관한 현황

문항	N	%
넘는다	47	33.81
넘지 않는다	51	36.69
관심을 두지 않았다	13	9.35
잘 모르겠다	27	19.42
기타	1	0.72
계	139	100.00

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현실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표 15〉 참조).

4) 위촉직 위원 선임 기준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 선임 기준에 대해 분석한 결과, 도서관 자체적으로 적절한 대상자를 찾는 경우가 76.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유

관기관 등 추천을 요청한다 39.61%, 다른 위원에게 추천을 요청한다 19.4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6〉 참조).

5)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에 대해 분석한 결과, 2년 이내가 84.89%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기타 의견으로는 2년에 연임이 가능한 형태와 잘 모르겠다라는 응답이 나타났다(〈표 17〉 참조).

〈표 16〉 위촉직 위원 선임 기준(복수응답)

문항	N	%
도서관 자체적으로 적절한 대상자를 찾는다	118	76.62
유관기관 등에 추천을 요청한다	61	39.61
다른 위원에게 추천을 요청한다	30	19.48
공모한다	14	9.09
기타	4	2.60

〈표 17〉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

문항	N	%
2년 이내	118	84.89
3년	10	7.19
4년	0	0.00
5년 이상	1	0.72
기타	10	7.19
계	139	100.00

6) 연임 횟수 제한 여부

운영위원회 연임 횟수 제한 여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경우가 41.7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와 함께 특별한 제한이 없다가 34.53%, 2회 제한이 12.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연임에 대한 규정을 잘 알고 있지 못하다가 다수 나타났다(〈표 18〉 참조).

4.2.5 운영위원회 주요 안건에 관한 사항

1) 운영위원회 심의내용

운영위원회에서 주로 심의되는 내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주요사업이 78.57%, 운영개선사항이 74.68%로 주를 이루었으며, 이와 함께 독서문화진흥 54.55%, 자료폐기, 제적 등이 40.91%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 민원인 요구

사항 논의, 도서관운영규정 수정, 도서관 리모델링에 대한 내용 등이 나타났다(〈표 19〉 참조).

2) 회의 결정사항 보고 여부

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 내용을 상부(시장이나 군수·구청장)에 공식적으로 보고하는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보고한다가 63.31%로, 보고하지 않는다가 36.69%로, 과반수 이상의 도서관이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을 상부에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0〉 참조).

운영위원회 결정사항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분석한 결과, 보고할 의무가 없어서 76.47%, 중요한 사안이 아니어서 13.73%로 나타났으며, 기타의견으로 기관 내부보고로만 처리함, 구청 담당과 책임자의 참여로 대신함 등이 나타났다(〈표 21〉 참조).

〈표 18〉 연임 횟수 제한 여부

문항	N	%
1회	58	41.73
2회	17	12.23
3회 이상	2	1.44
특별한 제한이 없음	48	34.53
연임이 없음	2	1.44
기타	12	8.63
계	139	100.00

〈표 19〉 운영위원회 심의내용(복수응답)

문항	N	%
주요사업	121	78.57
운영개선사항	115	74.68
자료수집, 장서개발 등	60	38.96
자료폐기, 제적 등	63	40.91
독서문화진흥	84	54.55
타 기관 업무협력	41	26.62
후원	6	3.90
기타	7	4.55

〈표 20〉 운영위원회 결정사항 상부 보고 여부

문항	N	%
보고함	88	63.31
보고하지 않음	51	36.69
계	139	100.00

〈표 21〉 회의 결정사항을 보고하지 않는 이유

문항	N	%
보고할 의무가 없어서	39	76.47
중요한 사안이 아니라서	7	13.73
보고할 시간이 없어서	0	0.00
보고를 원하지 않아서	0	0.00
기타	5	9.80
계	51	100.00

3)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반영 여부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반영 여부에 대해 분석한 결과, 95.45%가 회의결과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운영위원회 회의가 도서관 운영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표 22〉 참조).

이와 함께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반영 정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대부분 반영하고 있다 67.06%, 특별한 사항만 반영한다 15.29%, 결과는 모두 반영한다 12.94% 등의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이 운영위원회 회의결과를 도서관 운영에 반영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3〉 참조).

반면, 반영하지 않는 사유에 대해 응답한 결과, '반영할 만한 사안을 회의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와 '반영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해서'라고 응답하였다. 이는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및 회의 안건에 대한 부실함이 일부 존재함을 유추할 수 있다.

4) 운영위원회 회의록 대외 공개 여부

운영위원회 회의록의 대외 공개 여부에 대해 분석한 결과, 공개하지 않고 있는 도서관이

〈표 22〉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반영 여부

문항	N	%
반영함	84	95.45
반영하지 않음	4	4.55
계	88	100.00

〈표 23〉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반영 정도

문항	N	%
결과는 모두 반영함	11	12.94
대부분은 반영함	57	67.06
특별한 사항만 반영함	13	15.29
상부가 관심 있는 사항만 반영함	1	1.18
기타	3	3.53
계	85	100.00

61.87%로 대다수 공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24〉 참조).

5)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

회의록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분석한 결과, 공개할 의무가 없어서 53.49%, 공개할 필요성을 느껴본 적이 없어서 15.12%, 공개할만한 중요한 내용이 없어서 10.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회의록의 대외 미공개 사유는 앞서 언급되었던 회의 결정사항의 상부 미보고 이유와 동일하게 공개할 의무가 없기 때문으로 응답하였다. 이는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활동의 투명성과 공공성 보장을

을 위해 향후 운영위원회의 활동 공개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을 통해 대외적 공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표 25〉 참조).

4.3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방안에 관한 의견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운영방안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중요성, 운영위원회의 어려움 정도, 운영위원회의 중요한 기능, 운영위원회 활성화 방안, 운영위원회 표준 조례안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표 24〉 운영위원회 회의록 대외 공개 여부

문항	N	%
공개함	53	38.13
공개하지 않음	86	61.87
계	139	100.00

〈표 25〉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

문항	N	%
공개할만한 중요한 내용이 없어서	9	10.47
공개할 필요성을 느껴본 적이 없어서	13	15.12
공개하기 위한 업무 절차가 복잡해서	0	0.00
공개할 의무가 없어서	46	53.49
혹시 민원 제기가 염려되어	3	3.49
기타	15	17.44
계	86	100.00

1) 운영위원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가 민관협치 운영 측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설문한 결과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직원이 53.90%, 중요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직원이 10.39%, 평균 3.53으로 전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6〉 참조).

이와 함께 운영위원회 중요성에 대해 도서관 조례 내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 포함 여부, 운영위원회 업무 참여경험,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기간에 따른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도서관 조례의 포함 여부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대한 중요도 인식을 분석한 결과, 포함이 평균 3.55, 미포함이 평균 2.60으로 나타나, 도서관 조례 내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의 여부가 도서관 직원의 운영위원회 중요도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향후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도서관 조례에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을 반드시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표 27〉 참조).

다음으로 운영위원회 업무 참여경험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운영위원회 참여경험에 따른 중요도의 차이는 크지 않으나 기타 항목을 제외하고 3회~5회 참여한 직원의 중요도 평균이 3.88로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표 28〉 참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기간에 따른 운영위원회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설치·운영된 지 3년 이상~5년 미만인 경우 평균 3.9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운영위원회가 설치 또는 운영되지 않은 경우가 평균 3.07로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표 29〉 참조).

〈표 26〉 운영위원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문항	N	%	M	Std
전혀 중요하지 않음	3	1.95	3.53	0.870
중요하지 않음	13	8.44		
보통	55	35.71		
중요함	67	43.51		
매우 중요함	16	10.39		
계	154	100.00		



〈표 27〉 도서관 조례 내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 포함 여부에 따른 운영위원회 중요도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M	Std	F	P
	N	%	N	%	N	%	N	%	N	%				
포함	2	1.3	11	7.4	54	36.2	67	45.0	15	10.1	3.55	0.826	4.182	0.043
미포함	1	20.0	2	40.0	1	20.0	0	0.00	1	20.0	2.60	0.678		

〈표 28〉 운영위원회 업무 참여경험에 따른 운영위원회 중요도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M	Std	F	P
	N	%	N	%	N	%	N	%	N	%				
0회	1	1.5	6	8.8	27	39.7	27	39.7	7	10.3	3.47	0.855	2.444	0.037
1회~2회	2	5.0	6	15.0	14	35.0	16	40.0	2	5.0	3.60	0.778		
3회~5회	0	0.0	0	0.0	7	43.8	6	37.5	3	18.8	3.88	0.619		
6회~10회	0	0.0	1	0.0	3	27.3	6	54.6	1	9.1	3.36	1.120		
11회 이상	0	0.0	0	0.0	4	22.2	12	66.7	2	11.1	3.28	1.074		
기타	0	0.0	0	0.0	0	0.0	0	0.0	1	100.0	4.00	-		

〈표 29〉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기간에 따른 운영위원회 중요도

구분	전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M	Std	F	P
	N	%	N	%	N	%	N	%	N	%				
미설치(미운영)	1	6.8	3	20.0	5	33.3	4	69.7	2	13.3	3.07	1.163	1.748	0.102
1년 미만	1	20.0	0	0.0	1	20.0	3	60.0	0	0.0	3.40	0.548		
1년 이상~3년 미만	1	11.1	1	11.1	3	33.3	4	44.4	0	0.0	3.67	0.500		
3년 이상~5년 미만	0	0.0	2	13.3	3	20.0	10	66.7	0	0.0	3.93	0.799		
5년 이상~10년 미만	0	0.0	1	4.4	8	34.8	10	43.5	4	17.4	3.39	0.722		
10년 이상~15년 미만	0	0.0	4	14.4	16	50.0	12	34.3	3	8.6	3.66	0.802		
15년 이상~20년 미만	0	0.0	0	0.0	10	50.0	7	35.0	3	15.0	3.65	0.671		
20년 이상	0	0.0	2	6.3	9	28.1	17	53.1	4	12.5	3.38	1.040		

2) 운영위원회가 중요하지 않은 이유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분석한 결과, 형식적으로 운영되어서 62.50%, 위원회가 없어도 도서관을 스스로 잘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25.00%, 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어려워서 12.50% 순으로 나타났다(〈표 30〉 참조).

3) 운영위원회 운영의 어려움 정도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어려움 정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어렵다가 47.4%, 수월하다가 4.55%, 평균 2.50으로, 대다수가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1〉 참조).

이와 함께 운영위원회 운영의 어려움 정도를

〈표 30〉 운영위원회가 중요하지 않은 이유

문항	N	%
형식적으로 운영되어서	10	62.50
위원회 결정사항 등이 운영에 도움이 되지 못해서	0	0.00
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어려워서	2	12.50
위원회가 없어도 도서관 스스로 잘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4	25.00
기타	0	0.00
계	16	100.00

〈표 31〉 운영위원회 운영의 어려움 정도

문항	N	%	M	Std
매우 어려움	9	5.84	2.50	0.687
어려움	64	41.56		
보통	74	48.05		
수월함	7	4.55		
매우 수월함	0	0.00		
계	154	100.00		

도서관 조례 내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 포함 여부, 운영위원회 참여경험,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기간에 따른 차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도서관 조례 내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 포함 여부에 따른 운영의 어려움 정도를 분석한 결과, 포함된 경우가 2.53, 미포함된 경우가 2.00으로 나타나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대체적으로 운영위원회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2〉 참조).

다음으로 운영위원회 참여경험에 따른 운영의 어려움 정도를 분석한 결과, 기타를 제외하고 모두 3.0 미만으로 참여경험에 상관없이 전

반적으로 운영위원회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표 33〉 참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기간에 따른 운영의 어려움 정도를 분석한 결과,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한 적이 없는 경우 운영이 어렵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운영위원회에 대한 전반의 인식이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기간에 따른 어려움 정도의 차이가 크진 않지만, 15년 이상~20년 미만이 평균 2.8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4〉 참조).

〈표 32〉 도서관 조례 내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 포함 여부에 따른 운영의 어려움 정도

구분	매우 어렵다		어렵다		보통이다		수월하다		매우 수월하다		M	Std	F	P
	N	%	N	%	N	%	N	%	N	%				
포함	7	4.7	63	42.3	72	48.3	7	4.7	0	0.0	2.530	0.663	2.324	0.129
미포함	2	40.0	1	20.0	2	40.0	0	0.0	0	0.0	2.000	1.000		

〈표 33〉 운영위원회 참여경험에 따른 운영의 어려움 정도

구분	매우 어렵다		어렵다		보통이다		수월하다		매우 수월하다		M	Std	F	P
	N	%	N	%	N	%	N	%	N	%				
0회	4	5.9	34	50.0	28	41.9	2	2.9	0	0.0	2.397	0.694	2.006	0.081
1회~2회	4	10.0	16	40.0	19	47.5	1	2.5	0	0.0	2.625	0.667		
3회~5회	0	0.0	5	31.3	10	62.5	1	6.3	0	0.0	2.938	0.574		
6회~10회	0	0.0	5	45.5	6	54.6	0	0.0	0	0.0	2.364	0.674		
11회 이상	1	5.6	4	22.2	10	55.6	3	16.7	0	0.0	2.389	0.608		
기타	0	0.0	0	0.0	1	100.0	0	0.0	0	0.0	3.000	-		

〈표 34〉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기간에 따른 운영의 어려움 정도

구분	매우 어렵다		어렵다		보통이다		수월하다		매우 수월하다		M	Std	F	P
	N	%	N	%	N	%	N	%	N	%				
미설치(미운영)	4	26.7	9	60.0	2	13.3	0	0.0	0	0.0	2.200	0.862	0.602	0.753
1년 미만	1	20.0	2	40.0	2	40.0	0	0.0	0	0.0	2.400	0.548		
1년 이상~3년 미만	1	11.1	6	66.7	2	22.2	0	0.0	0	0.0	2.667	0.500		
3년 이상~5년 미만	1	6.7	7	46.7	7	46.7	0	0.0	0	0.0	2.333	0.724		
5년 이상~10년 미만	0	0.0	12	52.2	10	43.5	1	4.4	0	0.0	2.478	0.665		
10년 이상~15년 미만	0	0.0	14	40.0	17	48.6	4	11.4	0	0.0	2.629	0.690		
15년 이상~20년 미만	1	5.0	7	35.0	11	55.0	1	5.0	0	0.0	2.800	0.616		
20년 이상	1	3.1	7	41.6	23	48.1	1	4.6	0	0.0	2.438	0.619		

4) 운영위원회 운영의 어려운 이유

운영위원회 운영이 어렵다고 응답한 직원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 분석한 결과, 회의 개최 일정 정하기와 회의 준비과정이 각각 60%로 높게 나타났다. 기타의견은 위원 위촉의 어려움, 위원회 자체의 낮은 영향력으로 인한 참여 저조, 기타 잡무 등으로 나타났다(〈표 35〉 참조).

5) 운영위원회의 주요 기능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의 주요 기능에 대해 분석한 결과, 도서관 직원들은 도서관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33.12%, 운영에 필요한 정책 제안 31.17%, 정책 추진 근거 마련 18.18%, 민관협치 16.88% 순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도서관 운영 정책 제안 및 정책 추진 근거 마련 등 정책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49.35%로 나타나, 도서관 정책과 운영위원회의 운영이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표 36〉 참조).

6)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 요소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주

〈표 35〉 운영위원회 운영 시 수반되는 어려움의 유형(복수응답)

문항	N	%
회의 개최 일정 정하기	45	61.64
안전 준비(다들 만한 안전이 특별히 없어서)	29	39.73
회의 준비 과정	44	60.27
회의록 작성	21	28.77
운영 예산 부족	9	12.33
담당할 인원부족	33	45.21
기타	6	8.22

〈표 36〉 운영위원회의 주요 기능

문항	N	%
운영에 필요한 정책 제안	48	31.17
정책 추진 근거 마련	28	18.18
민관협치	26	16.88
도서관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	51	33.12
기타	1	0.65
계	154	100.00

요 요소에 대해 분석한 결과, 도서관의 적극적인 운영의지가 34.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와 함께 위원구성 32.47%, 위원회의 책임과 권한 15.58%, 전담직원 배치 11.0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직원들은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의 활성화 중 위원구성 및 위원회의 책임과 권한

등 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한 요소가 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와 더불어 도서관이 적극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표 37〉 참조).

〈표 37〉 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 요소

문항	N	%
위원구성	50	32.47
위원회의 책임과 권한	24	15.58
전담직원 배치	17	11.04
예산	2	1.30
조례 정비	6	3.90
도서관의 적극적 운영 의지	53	34.42
기타	2	1.30
계	154	100.00

7)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의 표준 조례(안) 제정에 관한 인식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표준 조례(안) 제정에 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필요하다고 64.94%,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직원이 35.06%로 나타나, 대다수의 직원이 표준 조례(안)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8> 참조).

표준 조례(안)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분석한 결과, 자율성 저해가 70.37%, 별로 유용성이 없어서 22.22%, 복잡해서 3.70% 등의 순으로 나타나,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에 대해 큰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9> 참조).

4.4 기타의견

기타의견을 분석한 결과, 크게 운영위원구성 측면, 운영위원회 운영 측면, 법제도 및 규정 개

선 측면, 운영위원회 조직 및 인력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운영위원회의 운영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그 중 현재의 운영위원회가 형식적인 요식행위가 되지 않도록 현실을 반영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현재의 운영위원회가 단순 불만 토로, 민원 제기의 장이 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건 제시되었다. 이를 통해 현재 운영위원회 운영 측면에서 운영위원회 회의 안건의 구체성과 현실성을 높여 단순한 요식행위 또는 불만 및 민원 제기의 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원의 구성 측면에서는 운영위원의 전문성, 지역의 대표성, 연령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운영위원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법·제도 측면에서는 소규모 도서관을 고려한 성비에 관한 개선안 마련, 지방에서의 부시장급 이상의 (부)위원장 당연직화 표준안, 운영에 대한 관련 법·규정 개정 등의

<표 38>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표준 조례(안) 제정에 관한 인식

문항	N	%
필요함	100	64.94
필요하지 않음	54	35.06
계	154	100.00

<표 39> 표준 조례(안) 제정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

문항	N	%
중요하지 않아서	1	1.85
별로 유용성이 없어서	12	22.22
복잡해서	2	3.70
자율성을 저해해서	38	70.37
기타	1	1.85
계	54	100.00

〈표 40〉 기타의견

문항	요점	N
운영위원 구성 측면	도서관에 대한 이해와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운영위원으로 위촉 필요	2
	전문가, 시민단체, 행정전문가 등의 다양한 위원구성 필요	3
	민간인을 호선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한 전문성 저하 우려에 따른 운영위원구성 개선 필요	1
	성비뿐만 아닌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연령 구성 고려 필요	1
운영위원회 운영 측면	각 도서관의 여건에 따라 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한 자율성 보장 필요	3
	운영위원회의 권한 및 책임 강화 필요	2
	정례회의 추진 필요	1
	운영위원회에 대한 인식이 저조해 활발한 활동 필요	1
	현재 운영위원회가 단순 불만 토로, 민원 제기의 장이 되고 있어 개선 필요	3
	결정사항 시행의 강제성 필요	1
	비대면 소통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수단 마련 필요	1
요식행위가 아닌 현실을 반영한 운영 필요	7	
법제도 및 규정 개선 측면	소규모 도서관의 경우 성비를 맞추기 어려워 개선안 필요	1
	지방에서의 부시장급 이상의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으로 당연직화 하는 표준안 제정 필요	1
	도서관장의 여건에 따라 운영위원회 개최여부가 결정되는 경향이 있어 관련 법규 제정 필요	1
운영위원회인력 및 조직 측면	지방의 중소규모 도서관의 인력 부족으로 운영위원회 운영이 어려워 인력 충원 필요	1
	행정업무 간소화 추세를 고려하여 증가하는 도서관 수에 따른 시군별 하나의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도서관별 3~5명 정도의 분과 설치 필요	1
	운영위원회 전담직원 배치 필요	1

의견이 제시되었다. 운영위원회의 인력 및 조직 측면에서는 운영위원회 운영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전담직원 배치, 인력 충원 등의 의견과 도서관 환경 변화를 고려한 시·군별 단일 운영위원회 구성 및 분과 설치에 대한 의견등이 제시되었다(〈표 40〉 참조).

### 5.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현황과 운영방안에 관해 도서관 직원의 설문조사를 통해 현황을 점검하고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설문

분석 결과에서 제기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도출된 논의점과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서관 조례에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이 높을수록 참여경험이 높고, 근무했던 도서관 수가 많을수록 참여경험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직급이 높을수록 참여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운영횟수는 1년에 1~2번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위원의 유형은 주민대표, 이용자, 시민단체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도서관 전문가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지 못했다.

셋째, 위촉직 위원의 성비가 특성 성의 비율이 넘는 곳도 있는데, 기타의견 내용 검토 결과

실질적으로 성비 구성에 대해 도서관에서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양성평등법」의 규정이 있는 만큼 준수를 위한 노력을 하면서도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운영위원회 회의 결정사항을 상부에 보고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보고하지 않는 이유와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서 보고할 의무가 없어서라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나 향후 운영위원회 규정 등에 회의록 보고 및 공개를 의무화 하는 조항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운영위원회 회의결과 반영 여부 조사에서 대부분이 회의결과를 반영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운영위원회 회의가 도서관 운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데, 회의결과를 공식적으로 보고하고 공개하는 절차를 마련한다면 향후 회의 결정사항 시행에도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섯째, 운영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면서도 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느끼는 점, 운영위원회 업무의 어려움 정도가 많다는 점, 어려운 이유로 회의개최 일정 정하기, 회의 준비과정, 담당할 인원 부족 등이 높게 나타나 이는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파악된다.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주요 요소 조사에서도 전담배치 직원 부분이 다소 높게 나타나, 전담인력이 배치되어 회의준비 등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참여하고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으

로 생각된다.

여섯째,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주요 요소로 위원구성과 위원회의 책임과 권한, 전담 직원 배치 등이 높게 나타났다. 기타의견 중 전문가, 행정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는 언급도 있어 도서관에 대한 관심도가 높으며 제도나 정책에 관한 전문 식견을 가진 전문가와 지역주민을 발굴해 위원으로 참여시킨다면 도서관 운영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규정 통해 더욱 강화하여 도서관 운영에 현실성을 반영함과 동시에 운영위원회 결정사항 등이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곱째, 운영위원회 관련 표준 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지만, 필요하지 않다고 한 응답 중에는 자율성 저해에 대한 우려가 높게 나타났다. 향후 표준 조례(안) 제정한다면 각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도서관 사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한 표준 조례(안) 제정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운영위원회 중요성에 대해 도서관 조례 내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 포함 여부, 운영위원회 업무 참여경험,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기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도서관 조례 내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이 포함된 경우가 운영위원회 중요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운영위원회 참여경험과 설치·운영 기간의 경우 3회~5회, 3년 이상~5년 미만인 경우가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운영위원회의 어려움 정도에 대해 도서관 조례 내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 포함 여부, 운영위원회 업무 참여경험,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기간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결과 도서

관 조례 내 운영위원회 관련 조항 포함 여부, 참여경험과 상관없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한 적이 없는 경우 운영이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위와 같이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현황과 운영방안에 대해 도서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한 논의점과 설문분석 결과를 살펴보았다.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는 「도서관법」과 그에 따른 각 시·군 도서관 운영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는 법률상의 조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의 운영현황에서도 조사되었듯이 1년에 1~2번 개최, 운영위원회 형식적 운영, 담당인력 부족 등에 따른 운영의 어려움, 위원구성의 어려움, 회의결과의 보고의무가 없고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이 부재한 점 등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과 문제 등이 존재한다.

「도서관법」 제30조 제2항에서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어야한다’고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제안, 정책 추진 근거 마련 등을 위해 현실적 상황을 극복하고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운영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과 동시에 운영 담당 직원을 확보하여 정기적 회의 개최뿐 아니라 회의 결정사항 등을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나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설문조사의 기타의견에서도 언급된 바 있듯이 공공도서관 위원회 내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도서관의 여러 이슈점검과 정책들을 기획·실행할 때 운영위원회를 다각적으로 활용·운영할 필요가 있다.

## 참 고 문 헌

- 김중성 (2013). 대구지역 공공도서관의 현 단계와 발전 과제: 지방자치단체 소속 도서관을 중심으로. *인문학논총*, 33, 105-134.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2022.7.7.). 출처: <https://www.libsta.go.kr/main>
- 도서관법, 법률 제18763호.
- 서혜란 (1995). 한국의 공공도서관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현황과 활성화 전략. *圖書館學論集*, 22, 171-203.
- 심효정, 노영희 (2022). 충청지역 공공도서관 조례에 포함된 도서관운영위원회 조항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6(3), 93-117. <http://dx.doi.org/10.4275/KSLIS.2022.56.3.093>
- 양성평등기본법, 법률 제18099호.
- 오동근 (2008). 공공도서관의 외부인적자원 활용에 관한 연구: 특히 미국 LA 및 인근지역 공공도서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1), 73-97.



- 오주환 (2014). 시민참여 기반의 공공도서관 거버넌스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도서관경영 전공.
- 정종기 (2008). 지방자치행정기관의 시민참여제도에 기초한 공공도서관의 주민참여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9(2), 333-354.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Section No. 18099.
- Jung, Jong-Kee (2008). A study on the citizen participation program of Korean public library based on the citizen participation programs of local government administra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9(2), 333-354.
- Kim, Jong-Sung (2008). A study on the present developmental stage of public libraries in daegu metropolitan city: focused on the public libraries which are affiliated to local governments. Humanities Journal, 33, 105-134.
- Library Law. No. 18763.
- National Library Statistics System Homepage (2022, July 7). Available:  
<https://www.libsta.go.kr/main>
- Oh, Dong-Geun (2008). A study on the support groups for public libraries: with a special regard to the cases of the Los Angeles City area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9(1), 1-25.
- Oh, Joo-hwan (2014). A Study on the Governance in Public Libraries Based on Citizen Participation.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 Sim, H. J. & Noh, Y. H. (2022). A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provisions of the Library Committee included in the Ordinance of Public Libraries in Chungcheong Province. Journal of the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6(3), 1-25.  
<http://dx.doi.org/10.4275/KSLIS.2022.56.3.093>
- Suh, Hye-Ran (1995). Resident participation in public libraries in Korea: current status and strategies for revitaliza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2, 171-203.

